

제2579호
2018. 05. 16.

발행인: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창식
 편집인: 공보실장 신선애
 전화: 3396-4952
 (http://www.junggu.seoul.kr)

선	기관의장
람	

구 보

◎ 고 시

- 제2018-53호 :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2-4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공사완료 고시 2
- 제2018-54호 :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3
- 제2018-55호 :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4

◎ 공 고

- 제2018-366호 :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5
- 제2018-367호 : 서울특별시 중구 금고지정 계획 공고 7

※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
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<<http://www.junggu.seoul.kr>(행정정보→구보/입법예고) 클릭>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● 구보게재의뢰 TEL.(02)3396-4952 / FAX.(02)3396-9022/3
 ●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,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.
 ※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※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공												
람												



고 시

◎ 서울특별시중구 고시 제 2018-53호

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2-4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공사완료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65호(2006. 10. 26)로 최초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107호(2009. 3. 19.) 및 제2014-119호(2014. 3. 27.)로 재정비촉진계획(변경) 결정되고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16-67호(2015. 8.10.), 제2016-44호(2016. 5. 10.) 및 제2018-34호(2018. 4. 4.)로 사업시행(변경)인가 고시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제 6-2-4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준공인가 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18년 5월 16일
서울특별시중구청장

- 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2-4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
- 2. 정비사업의 위치 : 서울특별시 충무로4가 131-6번지 일대
- 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성 명 : (주)성원애드피아 대표이사 정대원
 - 주 소 :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41길 6
- 4. 정비사업 준공인가 내역
 - 가. 토 지

시행면적(㎡)	대지면적(㎡)	정기기반시설(㎡)	비고
		도로	
747.0	585.9	161.1	

나. 건축개요

구 분	규 모	비 고
건축면적	저층 384.62㎡	건폐율 저층 63.80%
	고층 360.90㎡	고층 59.86%
연 면 적	6,011.90㎡	용적률 : 681.97%
층 수	지상12층, 지하5층	높 이 : 45.90m
용 도	숙박시설, 제2종근린생활시설	※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지정
조경면적	95.48㎡	
공개공지	46.45㎡	
주차대수	19대	- 장애인주차, 여성전용주차 각 1대

5. 관련도서 :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(☎3396-5754) 사무실에 비치

● 서울특별시중구 고시 제 2018-54호

도로명주소 부여고시

우리구 신축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8년 5월 16일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주소 부여기준
		도 로 명 고시일	도 로 명 부여기준
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가 58-5, -11	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38	2018.05.16.	을지로의 기초번호로 부여
		2010.05.26.	을지문덕 장군의 성을 인용한 도로명
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52-78	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88다길 31	2018.05.16.	퇴계로88다길의 기초번호로 부여
		2010.06.30.	퇴계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
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65-62	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90길 71-5	2018.05.16.	퇴계로90길의 기초번호로 부여
		2010.06.30.	퇴계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
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65-47	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90길 71-7	2018.05.16.	퇴계로90길의 기초번호로 부여
		2010.06.30.	퇴계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(☎02-3396-5944)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(www.junggu.seoul.kr)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 고시 후 『도로명주소법』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『도로명주소법』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『도로명주소법』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.

● 서울특별시중구 고시 제 2018-55호

도로명주소 폐지고시

우리구 도로명주소 폐지사항이 있어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8년 5월 16일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

연번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자	폐지사유
1	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10길 5-7	2018.05.16.	건물말소
2	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10길 27	2018.05.16.	건물철거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(☎02-3396-5944)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(www.junggu.seoul.kr)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서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공 고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8-366호

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

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정지 요청서를 제출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(자동차의 운행정지 등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(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),제23조(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)규정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18년 5월 16일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1. 공고의 명칭 : 자동차 운행정지 공고

2. 공 고 기 간 : 2018. 5. 16. ~ 2018. 5. 30.

3. 공 고 대 상

- 자동차등록번호 : 03너79**외 10대
- 소 유 자 명 : 편*민 외 10대
- 운행정지 명령일자 : 2018. 4. 1. ~ 4. 30.
- 운행정지 사유 : 소유자 요청

4.공 고 내 용

-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,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잡니다.
-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,자동차관리법제13조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 가능하고, 무등록 자동차 운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잡니다.
-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중구청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(02-3396-6248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운행정지 자동차 현황

연 번	운 정 지 상 태	자 동 차 등 록 번 호	소 유 자 명	소 유 자 등 록 번 호	사 용 본 거 지 주 소
1	등록	03너79**	편*민	840105-1*****	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14길
2	등록	35무57**	비*****코리아(주)	110111-2*****	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
3	등록	서울31거82**	(주)디*스	110111-1*****	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3가
4	등록	59다76**	김*빈	880718-1*****	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
5	등록	88머17**	송*헌	570821-1*****	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60길
6	등록	충남31노71**	송*헌	570821-1*****	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60길
7	등록	55머54**	송*헌	570821-1*****	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60길
8	등록	충남7모36**	송*헌	570821-1*****	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60길
9	등록	87러33**	주식회사 에***디	110111-3*****	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
10	등록	19저74**	메*****코리아(주)	110111-2*****	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
11	등록	54너44**	메*****코리아(주)	110111-2*****	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8-367호

서울특별시 중구 금고지정 계획 공고

서울특별시 중구는 현 구금고와의 약정이 2018. 12. 31.자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구금고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5월 16일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1. 금고의 수 : 단수금고

- 일반회계 · 특별회계(세입세출외현금 포함), 기금을 모두 관리하는 금고 지정

2. 금고의 주요내용

- 시세, 구세 등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
-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,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
- 유희자금의 보관 및 관리
-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된 업무

3. 지정방법 : 일반공개경쟁

- 서울특별시 중구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 최고득점 금융기관을 우선 지정 대상금융기관으로 선정
- 우선지정 대상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차순위 득점자와 약정체결 진행

4. 약정기간 : 2019. 1. 1. ~ 2022. 12. 31. (4년)

5. 신청자격 : 「은행법」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고, 본점이 서울특별시에 있고 중구 관내에 지점을 둔 금융기관

6. 신청절차

(1) 서류열람

- 열람기간 : 2018. 5. 28.(월) ~ 6. 12.(화) ※ 단, 근무시간 내(09:00 ~ 18:00)
- 열람장소 : 중구청 2층 재무과 사무실
- 비치서류 : 2015 ~ 2017년 예산서 및 결산서 등

(2) 설명회 개최

- 일 시 : 2018. 6. 1.(금) 15:00
- 장 소 : 중구청 지하 합동상황실

(3) 신청서(제안서) 접수

- 접수기간 : 2018. 6. 14.(목)~ 6. 19.(화) 09:00 ~ 18:00
- 접수장소 : 중구청 2층 재무과 사무실(본관)
- 접수방법 : 방문접수
- 제출서류 * 공문제출
 - 구금고지정신청서, 각서, 사용인감확인서, 법인 인감증명서, 정관, 등기부등본
기타 중구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에서 정하는 서류
 - ※ 제출서류 밀봉
 - ※ 신청서 접수기한 경과 시 추가서류 또는 보완서류 접수하지 않음에 유의
- 제출부수 : 제안서 및 증빙서류, 부속서류 등 각 서류당 14부(원본1부, 사본13부)

7.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

평가항목	배점
합 계	100
1.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	31
2.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	18
3. 구민의 이용 편의성	20
4. 금고업무 관리능력	22
5.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	9

- ※ 평가세부항목 및 배점은 「서울특별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
및 설명회 시 배부하는 금고지정신청안내서 참조

8. 심사방법

-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며, “금고업무 관리능력(특히, 전산시스템 분야)”은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·응답을 실시할 예정임
-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번호 순서와 같음.
-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평가·심사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·제출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을 0점 처리 또는 그에 상응한 불이익 처분을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르는 모든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 있음

9. 약정 및 손해배상

- 구금고 우선지정 대상자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지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
- 구금고 우선지정 대상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임의로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등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여 중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금융기관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며 향후 금고지정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- 금고지정 또는 약정체결 이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해 금고로 지정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금고지정 또는 약정이 해지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게 있으며, 이에 대한 배상책임 및 향후 금고지정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.
- 금고업무를 위한 전산시스템 및 운영프로그램은 2019. 1. 1.부터 정상 운영되어야 하며, 2019. 1. 1.부터 정상 운영되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 등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

10. 비용부담

- 금고지정 신청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신청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함

11. 기타사항

- 제안서는 우리구 금고지정신청 안내서에 따라 작성하되, 심의 및 평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평가분야 및 세부 평가항목별로 색인표 부착요망
- 작성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었을 경우 또는 제반계획 및 제안 등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제안서가 무효처리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하여야 함
- 제안서 접수 시 신청은행별 제안서 14부를 확인한 후 밀봉할 예정이므로,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사용인감(도장) 및 사용인감확인서 지참.
- 접수된 제안서는 해당 금융기관 관계자 및 중구 재무과장 등이 확인하여 봉합 날인 후 재무과 별도장소에 보관하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개최장소에서 개봉함
- 기타 문의사항은 중구 재무과로 문의 (☎02-3396-5032)